

[일련번호 : 9]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습득 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의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무단전출, 직원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파기하여야 하고,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사무편람」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시·군·구로부터 이송되어온 습득 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분실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분실 재발급을 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에 등재하여 파기하

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6건에 대하여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며 법령상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수처리하지 않았거나,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보관 또는 회수처리 사항에 대해 작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부적정 내역

연번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수령여부	부적정 내역
1	220830			미수령	231226 미수령 파기 사유로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2	220725			미수령	231226 미수령 파기 사유로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3	220727			미수령	231222 미수령 파기 사유로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4	220401			미수령	231004 미수령 파기 사유로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5	220329			미수령	231004 미수령 파기 사유로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6	231215			미수령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재 누락
7	230919			미수령	241022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8	230904			미수령	240411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9	230620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재 누락
10	241114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재 누락
11	240729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재 누락
12	240723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재 누락
13	240426			미수령	250521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14	240524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재 누락
15	240329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재 누락
16	240110			미수령	250307 회수하였으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 작성 누락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